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출(의안번호 제5021호)

2026. 7.

교육안전전문위원

〈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5021호
- 제 출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 제출일자 : 2026년 7월 3일
- 회부일자 : 2026년 7월 4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화재·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서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긴급 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소방기본법」 등(첨부 2)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2026. 5. 20. ~ 6. 9.(20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부서협의
 - 가) 협의기간: 2026. 5. 20. ~ 6. 9.(20일)
 - 나)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내용 없음, 법무혁신담당관-5033(2026.5.18.)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감사위원회-4360(2026.5.19.)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인구여성가족과-11873(2026.5.27.)
 - 3) 비용추계 현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첨부 3)
 - 4) 정책조정회의 심의 여부: 해당 없음
 - 5)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법무혁신담당관-6510(2026.6.25.)
 - 6) 관계 중앙부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본 제정안은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 및 구급차의 현장 진입이 어렵거나 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성

- 제정안은 다음과 같이 총 6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조문체계 〉

조 문	규정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부 칙	
제1조	시행일

가.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기본법」 제16조에서 화재·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도록 한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긴급차량”,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소방용수시설등”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의 적용범위와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로 정의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차량으로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용 중인 긴급차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1] 세종소방본부 긴급차량 보유 현황(2026년 기준, 세종소방본부 제공)

구분	합계	펌프차				산불진화차	물탱크차	무인방수차	화학차	화생방차	사다리차	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연차	장비운반차	행정차	안전진단차	기타
		소계	소형	중형	다목적															
계	114	21	5	15	1	1	6	2	4	1	6	18	6	15	3	2	5	6	5	13
본부	7	-	-	-	-	-	-	-	-	-	-	2	-	-	1	-	1	2	1	-
세종북부	49	10	3	7	-	-	2	1	2	1	3	7	3	6	1	1	2	2	2	6
세종남부	58	11	2	8	1	1	4	1	2	-	3	9	3	9	1	1	2	2	2	7

-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은 소방청의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관리기준을 반영하여 정의한 것으로, 기존의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긴급차량의 출동을 저해하는 지역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존 관리기준에 따라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 지역을 6개소 관리하고 있음

[표 2] 세종소방본부 진입불가(곤란) 지역(2026년 기준, 세종소방본부 제공)

연번	관할 소방서	진입불가(곤란)지역	진입여부	사유
1	남부	금남면 성덕2길 22-3 ~ 36-9	진입불가	도로협소
2	남부	금남면 성덕2길 35-17 ~ 35-6 ~ 7-17	진입불가	도로협소
3	북부	소정면 맹골2길 일대(14 ~ 18)	진입곤란	도로협소
4	북부	연동면 예양길 일대(32 ~ 45)	진입불가	도로협소
5	북부	소정면 뒷고랑길 일대(6 ~ 40)	진입불가	도로협소
6	북부	조치원읍 광명길 일대	진입불가	도로협소

- “소방용수시설등”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의 출동환경 개선과 초기 대응 기반 확보를 위한 시설 관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이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

도록 규정한 것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규정으로 보임
- **안 제3조**는 시장이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이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라.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이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방안, 소방용수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역별 여건과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출동환경 개

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결과가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개선 우선순위, 관계기관 협의사항, 예산 반영 필요성, 이행점검 결과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함

마.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물리적 도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병행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협소한 도로, 불법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주변 장애물 등은 긴급차량 출동 지연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지역별 위험요인과 반복 민원 발생 구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안 제6조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소방, 경찰,

도로관리부서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사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다만, 협력체계가 형식적인 회의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지정·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도로환경 개선, 안전표지 설치, 시민 홍보 등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추진성과와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재·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차량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소방기본법」 제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는 화재·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소한 도로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이 지연될 경우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출동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홍보, 소방안전교육,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함
-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결과가 관리계획 및 개선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도로관리기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성과와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소방차 제원

< 국내 소방차의 제원과 회전반경 >

(단위:mm / 출처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소방청)')

참고



국내 소방차의 제원과 회전반경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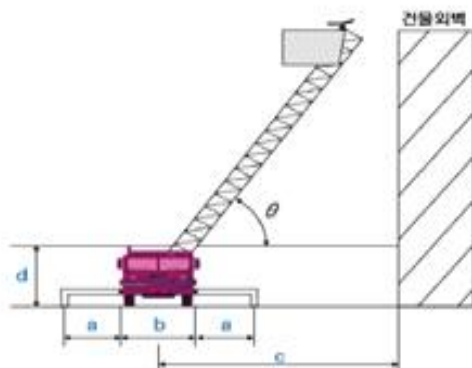
차종	구분	전장(길이)	전폭(폭)	전고(높이)	축간거리	회전반경	용량(L)
화학차	고성능	12,000	2,500	3,800	4,925	11,158	11,000
	대형	9,000	2,500	3,400	4,925	10,718	4,000
펌프차	대형	8,500	2,500	3,400	4,925	10,718	4,700
	중형	8,000	2,500	3,200	4,260	7,300	3,000
물탱크차	대형	10,000	2,500	3,700	4,925	11,158	12,000
	중형	8,500	2,500	3,400	4,260	10,718	6,000
사다리차	33m 이상	12,500	2,500	3,900	4,925	11,889	-
	33m 미만	10,000	2,500	3,800	4,925	11,340	-

⇒ 원활한 피난 및 소화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 단지내 진입로의 경우 회전반경 이상으로 설계반영 필요함(권장)

※ “제작규격”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제작사별 제원이 상이할 수 있음

< 소방차량 제원(70M 굴절차) >

(출처: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소방청)')



범 례		
a	아웃리거 전개	2.7m
b	소방차 폭	2.5m
c	건물과 이격거리	6~15m
d	소방차 높이	4.0m
e	사다리각도	0~80도

참고 2

기존 소방차 진입불가 · 곤란지역 현황('25년말 기준)

구분	합계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소계	주거	상업	공업	보전	농어촌 산간도 서	곤란	불가	곤란
합계	920	702	521	125	11	3	42	179	8	31
서울	325	316	259	52	3	2	0	9	-	-
부산	158	108	89	17	2	0	0	31	4	15
대구	82	63	40	15	5	0	3	18	-	1
인천	89	72	49	20	1	0	2	10	3	4
광주	6	4	3	1	0	0	0	-	-	2
대전	67	36	27	9	0	0	0	31	-	-
울산	34	23	12	6	0	0	5	11	-	-
세종	6	6	5	0	0	0	1	-	-	-
경기	4	4	3	0	0	0	1	-	-	-
경기(북)	10	10	9	1	0	0	0	-	-	-
강원	5	5	5	0	0	0	0	-	-	-
충북	5	2	0	0	0	0	2	-	1	2
충남	4	0	0	0	0	0	0	1	-	3
전북	4	4	1	3	0	0	0	-	-	-
전남	11	8	4	0	0	1	3	-	-	3
경북	14	11	0	0	0	0	11	3	-	-
경남	47	6	1	0	0	0	5	41	-	-
제주	9	8	2	1	0	0	5	-	-	1
창원	40	16	12	0	0	0	4	24	-	-

【첨부자료】

1.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문 의 처
044)300-7510

첨부 1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이란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대응하기 곤란하거나 진입하기 어려워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3. “소방용수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 나.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서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
3.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의 소방용수시설등 설치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2.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3. 도로환경의 개선 및 안전표지의 설치
4.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소방기본법」

제10조의2(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의22(정의)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① 소방차
- ② 구급차
- ③ 혈액 공급차량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119대응과장 이 장 주